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100 번호

발 의 년 월 일:2022년 08월 26일

발 의

자: 김 경, 김영옥, 박승진, 박칠성, 봉양순, 송도호, 아이수루, 왕정순, 이병도 , 이상훈, 이영실, 이원형, 정준호. 최재란. 황유정
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○ 시장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하여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인 정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보호구역 내 횡단보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신호 음성안 내 보조장치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시장이 노력하도록 규정 함(안 제7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도로교통법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하여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 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의3(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	제7조의3(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
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) ① (생	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
	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하여 사고
	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어
	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
	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
	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
	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
	하여야 한다.
② (생 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